

The Critique of Dogmatic Setting of Educational Purposes: Focusing on Plato's Political and Educational Thoughts

Song, Min-Kyu (Korea University, Doctoral Candidate)

Shin, Chang-Ho¹⁾ (Korea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In this paper, I defined deducing educational purposes based on an ideal society that was conceived arbitrarily by philosophical speculation as ‘Dogmatic Setting of Educational Purposes’ . I analyze Plato’s political and educational ideas, which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dogma. In *Politeia*, the idea of a republic cannot be reasonably explained due to ‘kallipolis-eidos paradox’ which means incompatibility with the idea of a republic and his theory of forms. Therefore the education that Plato has offered to bridge these gaps has degenerated into propaganda. Meanwhile, in *Nomoi*, Plato had overcome the ‘kallipolis-eidos paradox’ by modifying his theory of forms. However, since the law is based on Plato’s own arbitrary legislation, education that forces citizens to voluntarily obey the law is nothing more than domestication. These consequences are inevitable as long as Plato maintain the ‘Dogmatic Setting of Educational Purposes’ . In addition, these risks are inherent in the current branch of educational philosophy, as well as in Plato’ s. Therefore, the philosophers of education are required to criticize the limitations of the philosophy of education.

Key Words : Philosophy of education, educational purposes, Plato, 『Politeia(Republic)』, 『Nomoi(Laws)』, theory of forms, Plato’ s idea

1) Corresponding Author: Shin, Chang-Ho, Professor,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02841 / E-mail: sudang@korea.ac.kr

독단적 교육 목적 설정 비판: 플라톤의 정치·교육 사상을 중심으로

송민규 (고려대학교, 박사수료생)

신창호¹⁾ (고려대학교, 교수)

< 요약 >

본고는 철학자가 사변에 근거하여 이상 사회를 구상하고, 그러한 사회의 달성 또는 유지·발전을 위한 교육 목적 연역을 ‘독단적 교육 목적 설정’으로 규정하고, 그 대표적 사례인 플라톤의 정치·교육 사상을 분석한 것이다. 『국가』에서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 국가는 그의 형상 이론과 양립 불가능성, 즉 ‘국가-형상 역설’로 인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제시된 교육은 선전(宣傳)으로 전락한다. 한편, 『법률』에 이르러 플라톤은 그의 형상 이론을 수정하여 ‘국가-형상 역설’을 극복하였다. 이때의 법률은 플라톤 자신의 독단적 입법에 근거하므로, 시민들이 법률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교육은 순치(馴致)에 지나지 않는다. ‘독단적 교육 목적 설정’을 견지하는 한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위험은 플라톤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철학 분과에 내재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육철학자들에게는 교육철학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요구된다.

주요어 : 교육철학, 교육 목적, 플라톤, 『국가』, 『법률』, 형상 이론, 이데아론

1) 교신저자: 신창호, 교수,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 E-mail: sudang@korea.ac.kr
논문투고일자: 2021. 2. 8 / 심사일자: 2021. 2. 17 / 게재확정일자: 2021. 3. 12

I. 서 언

교육은 구체적인 목적을 지향한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 활동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교육의 모든 양상을 한가지로 명확하게 서술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모종의 긍정적 변화가 전제된다. 부정적 변화를 위해 애써 노력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의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은 사회의 발전이나 최소한의 유지를 위해 시행되리라 생각할 수 있다. 사회의 황폐화나 와해를 목표로 사회가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화의 위험성을 무릅쓰더라도, 모든 교육은 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한다(Durkheim, 2019).

헤르바르트 이래로 교육학 분야에서 교육 목적 설정은 교육철학 분과의 영역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이때 교육철학의 연구는 여타의 철학 분과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변 또는 이성에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교육 목적 설정에서, 그 시초는 아마도 서양철학의 토대인 플라톤일 것이다. 그의 정치사상은 ‘형상(形象, eidos) 이론’을 통한 정치적 이상 설정에서 비롯되었으며, 교육은 그러한 이상을 달성하려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플라톤에게서 교육은 자신이 설정한 이상 국가에 걸맞은 이상적 형태로 제시되며, 그 목적 또한 이상적 교육에 기초하여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와 같은 교육 목적 설정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교육의 목적이 사회의 요구에서 비롯된다.’는 명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인의 이상에는 개인의 욕구가 반영되기 마련이고, 사회적 요구는 이러한 개인의 욕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한 비판은 이미 러셀을 필두로 하여 이루어진 바 있으며, 특히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Popper, 2006)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유독 교육철학 분야에서는 Kang(2010)과 Kim(2017)을 제외하면 플라톤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고는 플라톤과 같은 방식의 교육 목적 설정 방식을 ‘독단적 교육 목적 설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독단’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첫 번째는 ‘개인에 의한 판단’이라는 의미로, 이는 플라톤이 철인에 의한 독재를 이상적 정치 형태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로, ‘독단’은 철학자가 자신의 사변에 근거하여 사회의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경험 세계로 확장하여 교육 목적을 연역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이성의 한계를 비판하지 않은 채 인식을 경험 세계의 영역에까지 확장하였다

는 점에서 칸트적 의미의 독단이라 할 수 있다(Lee, 1997). 이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의미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의미의 독단으로부터 여러 사람이 플라톤적 작업을 시도한다면 플라톤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비판하는 ‘독단적 교육 목적 설정’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개인에 의한 사안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의 독단, 즉 이성의 독단적 사용에 기인한다.

한 인물, 특히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학자의 방대한 철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합성을 갖는 전체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물론, 시기에 따라 한 인물의 입장이 크게 변화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시기별로 그 인물이 가진 철학적 체계를 살펴보고, 체계의 정합성과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 살펴볼 플라톤의 사상 또한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중기작인 『국가』와 후기작인 『법률』 사이에는 플라톤 철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형상 이론이 크게 수정되었다. 이는 플라톤의 정치·교육 사상에도 모종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II장에서는 『국가』에 나타난 플라톤의 정치적 지향과 그 한계를 형상 이론에서 비롯되는 역설을 통해 분석하고, 교육이 그의 이상을 주입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함을 밝힌다. III장에서는 『법률』을 통해 이전과 변화한 사상적 양상을 분석한다. 플라톤이 후기에 이르러 그의 사상을 수정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법률』의 정치사상에 대한 해석은 『국가』와 다르게, 독재국가에서 법치국가로 정치적 지향을 수정하였다는 주장과 『국가』의 연장선상에서 철인왕의 독재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양분된다. 이 가운데 후자의 관점을 취하여, 플라톤의 교육 사상 또한 일부분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시민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서 순치(馴致)에 불과함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플라톤의 교육 사상이 선전이나 순치에 머무르고 있음을 증명한다. 즉 그의 철학이 개인의 사변에 기초한 독단적 이상 설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 교육 목적을 제시하는 ‘독단적 교육 목적 설정’의 필연적 야기 근거를 밝힌다. 교육철학의 임무가 ‘교육 목적을 설정한다’ 데 있다는 테제가 받아들여지는 한, 이는 플라톤 시대나 그 이후의 특정 시대에 한정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교육철학이 갖게 되는 필연적 한계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II. 『국가』: 철인 독재의 이상과 선전으로서의 교육

1. 국가의 형상과 이상 국가

플라톤의 교육은 사회의 유지 또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플라톤이 “건전한 양육과 교육(paideusis)이 유지됨으로써 훌륭한 성향(자질)을 생기게 하고, 다시 건전한 성향은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선인(先人)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로 자랄 것”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Plato, 2015, 424a). 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그가 유지 또는 발전시키려는 국가의 이상적 모습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제시된다. 이때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 국가(kallipolis)를 “각자가 자신의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각자가 여럿 아닌 한 사람으로 되도록” 하는 ‘하나의 나라(mia polis)’로 설명한다(Plato, 2015, 423d).

이상 국가의 모습은 그의 후기작 『법률』에서 “ 으뜸가는 나라(prote polis)와 나라 체제(정체: politeia) 그리고 최선의 법률”(Plato, 2016, 739b-c)을 “친구들의 것들은 공동의 것(koina ta philon)”(Plato, 2015, 449c)이라는 옛말이 실현되는 곳이라 설명하면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즉, 모든 이들이 재산은 물론 가족과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공유하는 하나의 나라, 그리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야말로 최선의 것이라 할 수 있다(Plato, 2016, 739c-d). 이로부터 하나의 나라는 단순한 비유가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나라는 실제로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능을 분담하여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플라톤의 이상 국가가 그의 형상(eidos) 이론에 근거한다는 것, 즉 그의 국가 수립 기획이 ‘국가의 형상’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9권에서 “그 나라는 지상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Plato, 2015, 592a-b)이라는 글라우콘의 말에 대하여, 플라톤이 “그렇지만 그것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자신을 거기에 정착시키고 싶어 하는 자를 위해서 하늘에 본(paradeigma)으로 바쳐져 있다”(Plato, 2015, 592b)고 대답하면서 끝이 난다. 이때 “나라는 신적인 ‘본’(paradeigma)을 이용하는 화가들이 나라의 밑그림(diagraphē)을 그리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을 것”(Plato, 2015, 500e)이라는 진술을 통해 국가의 본은 이상 국가의 밑그림을 위해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현실에서 모방해야 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플라톤에게서 직관(直觀)할 수 있는, 즉 ‘본(paradeigma)’은 형상(eidos)을 의미하므로, 하늘에 본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바로 국가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순히 플라톤의 이상 국가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기능이 집이 아니듯, 국가의 본은 현실에서 그것을 보고 따라야 할 형상이 아니라 단지 예시 정도의 수준에서 제시된 것일 뿐이다(Park, 1987). 플라톤이 그의 형상 이론을 오랜 시간 수정하였기에, 본과 형상에 대해 여러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의 본이 실현 불가능한 예시에 불과하다는 해석은 플라톤 사상의 체계에 정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 자체 내에서도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우선 “침상인 것 자체” (Plato, 2015, 597c-e)와 같이 가구의 형상까지도 설정하면서, “이데아 내지 형상은 바로 그 가구의 본(paradeigma)” (Park, 1987, p. 13)이라고 명시하였던 그가 같은 책인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국가의 형상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플라톤 철학 체계의 정합성을 손상하는 해석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그가 자신이 제시한 본으로서의 국가의 불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본에 대해서만 “현실성 없는 ‘본’ ” (Park, 1987, p. 38) 정도의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플라톤 스스로 이후에 그러한 국가의 형상을 실현 불가능한 망상으로 고려했다 하더라도, 중기의 형상은 ‘한 가지 보임새인 것’ (monoeides on)으로 다루어지고, 『국가』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강조된다(Park, 1987). 적어도 『국가』 안에서 플라톤은 국가의 본을 형상과 같은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의 형상 이론에 따르면 형상은 “사물처럼 구체적인 것으로 실재하며 현상 속의 사물들의 범형(paradeigma)이 된다” (Song, 2009, p. 449). 즉, 감각세계는 형상의 모방에 불과하므로 형상이야말로 실재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형상은 실재해야만 하며, 그가 제시한 불변의 이상 국가는 “국가적 형상이나 이데아의 정확한 모사” (Popper, 2006, p. 149) 이어야만 한다. 또한, 모든 형상(eidos)은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처럼 부동의 나누어질 수 없는 불변의 원자처럼” (Song, 2009, p. 442) 존재한다. 형상 “그 자체는 하나이지만, 여러 행위 및 물체와의 결합(교합, 관여: koinōnia)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들 상호 간의 결합에 의해서” (Plato, 2015, 476a) 여럿으로 나타난다. 즉 플라톤의 존재론 체계 안에서 형상은 하나로 존재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형상 이론과 국가의 형상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편의상 ‘국가-형상 역설(kallipolis-eidos paradox)’이라 부른다.

나라의 구성은 개인의 자족이 불가능하기에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chreia)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때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으로 나라를 구성할 수는 없는 일” (Park, 1987, p. 29)이며, 생존을 위해서는 식량, 주거지, 의복, 제화공, 몸을 보살피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최소한도의 나라’라 할지라도 4~5명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Plato, 2015, 369b-d). 그러므로 나라의 형상이 존재한다면, 사람의 형상은 하나일 수 없다. 그것이 국가인 한, 국가의 형상에서 구성원의 존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별도로 사람의 형상 자체가 존재” (Plato, 2019a, 130c)한다고 보았다. 이는 각각의 형상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에 모순된다. 플라톤은 후기에 그의 형상 이론을 수정하여 “개개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chōris) 사람의 형상은 …… 사람의 구실 내지 기능(ergon)” (Park, 1987, p. 13)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위의 모순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는 플라톤의 중기 저작이므로, ‘국가-형상 역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대해 “헬라이어 에이도스(eidos)는 ‘종’ (種)을 의미하기도 한다” (Park, 2019, p. 198)는 점을 들어, 플라톤이 제시한 인간의 형상을 인간의 종에 대한 지성적 접근으로 얻어지는 정보로 인식하기도 한다. 예컨대 DNA 분자 구조 등의 유전 정보와 같은 것들로 볼 수 있다는 주장으로 플라톤의 형상 이론을 옹호한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형상은 하나로 존재해야 하므로, 각각의 인간 안에서 떼어내 실재할 수 없는 유전 정보는 형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근대 이후의 과학이 플라톤 당대의 자연철학과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발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플라톤이 예측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Song & Shin, 2020a, p. 109-110). 뿐만 아니라, DNA와 같은 유전 정보의 획득은 과학적 연구의 성과이며, 이 과정에는 플라톤이 배제하려고 했던 감각경험이 필수적으로 개입된다. 그렇다면 이는 결코 형상에 대한 탐구와 연결될 수 없으므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aides)” (Park, 2019, p. 204) 형상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플라톤 철학의 근거를 현대의 과학과 철학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현대적 반론을 통해 플라톤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의 철학 안에서 그에 대한 반론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형상이 “지성으로 알 수 있는” (Plato, 2019b, 51c) 것, 즉 오직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to noēton genos)’이며, 명제의 형태로 제시될 수 없고, 감각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플라톤은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Plato, 2015, 509d-511e). 즉 “사물들은 감각적 지각(aisthēsis)에 지각될 수 있는 것(to aisthēton)이나, 형상은 지성(nous) 내지 순수 사유(noēsis)에 알려질 수 있는 것(to noēton)” (Park, 1979, p. 33; Park, 1987, p. 7)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상 이론에 대한 비판을 비판자의 사유가 부족한 탓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원 가능성은 플라톤 자신의 인식과 지성의 작용을 동일시함으로써 독단적으로 이상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형상 이론과 국가의 형상 간에 발생하는 반대 관계(contraries)는 단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호논리학에서 $\sim(P \& \sim P)$ 로 표현되는 규칙, 즉 모순되는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모순율(law of contradiction)에 위배되는 오류이다(Aristotle, 2010, 1011b 14). 형상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하나가 아닐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학문으로서의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타당한 추론에 대한 논의는 『오르가논』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W. Kneale, & M. Kneale, 2016). 특히 모순율은 동일률, 배중률과 함께 이미 파르메니데스의 사유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의 사고법에 이미 전제되거나 생각된 것” (Song, 2015, p. 13)이었으므로 플라톤은 이를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플라톤이 최선의 국가로 ‘하나의 나라’를 강조한 것은 이러한 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봉책일 수 있다. 국가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설정하고, 각 구성원은 그것의 기능을

나누어 갖는다고 본다면 형상이 하나여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이 그의 집단주의에 영향을 준 것인지, 그의 집단주의적 경향이 이러한 발상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획 속에서 플라톤이 개인을 하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주의를 혐오하며, 극단적인 집단주의/전체주의를 열렬히 찬양하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Popper, 2006). 이때 개인주의는 개인적 이타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이기주의’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이는 형상에 대한 기초적 논의에서 파르메니데스가 제기하였던 문제, 즉 ‘관여하는 것이 형상 전체인가, 형상의 일부인가?’의 문제에 봉착한다(Plato, 2019a, 131b). 결국, 국가-형상 역설은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2. 교육의 실체

이상 국가 건설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본(paradeigma)의 설정부터 이성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난관을 플라톤은 비이성적 방법을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 신화와 거짓말을 통해 시민들을 속임으로써 그저 자신들이 살게 될 국가가 원래부터 그런 것이라 ‘믿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에서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위해 거짓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정당화한다.

“…… 신들에게는 거짓(거짓말: pseudos)이 무용하나, 인간들에게는 약의 형태로 유용하다면, 그런 거야 의사에게나 허용할 일이지, 결코 사인(私人)들이 관여해서는 아니 될 일이기 때문이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밖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허용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그 나라의 통치자들로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적이나 시민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 밖의 사람들로서는 누구든 그런 것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네…….” (Plato, 2015: 389b-c)

플라톤에게 이상 국가의 통치자는 곧 철학자이다(Plato, 2015). 이때 철학자는 “진리(altheia)를 구경하기 좋아하는 사람”(Plato, 2015, 475e)을 의미한다. 이는 곧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움 자체’(auto to kalon)를 보는 사람, 즉 “‘그 자체로서’(kath’ hautō) 볼 수 있는 사람”(Plato, 2015, 476b)이다. 이때 앞에 자체(auto)가 붙는 낱말은 그 낱말의 형상을 의미한다(Park, 2019). 이상 국가가 나라의 형상, 즉 나라의 ‘본’(paradeigma)을 토대로 하는 밑그림(diagraphē)에 기초한다고 할 때, “철학자들은 나라와 인간의 성격을 화판(畫板)처럼 갖고”(Plato, 2015, 501a) 밑그림을 그리는 바로 그 화가이다. 오직 변증법에 능통한 참된 철학자만이 “모형의 본을 떠낼 수 있으며, 그것을 하늘에

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Popper, 2006, p. 249).”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거짓을 진리로 믿도록 선전까지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이토록 국가의 수립을 중요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인가? 플라톤에게 이상 국가는 곧 정의(正義)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논의되는 주된 주제는 ‘올바른 상태(dikaisynē)’ 즉 정의(正義)이다. 국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맥락 또한 나라가 개인보다 큰 만큼, 나라의 정의를 탐구하는 작업이 개인의 올바름을 탐구하는 일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점으로부터 시작된다(Plato, 2015). 플라톤은 이처럼 정의에 관해 탐구함으로써, ‘본(paraeigma)’ 이 되는 것, 즉 ‘올바름 그 자체’ 를 찾고자 하였다(Plato, 2015, 472c). 이상 국가는 올바르게 사는 것, 즉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과 직결된다.

긴 논의 끝에 정의(正義: 올바름)에 대해 플라톤은 “ ‘제 것의 소유’ 와 ‘제 일을 함’ ” 으로 짧게 정의(定義)한다(Plato, 2015, 433e-434a). 이는 ‘각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는 식의 주장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어서 플라톤은 목수와 제화공과 같은 노동자들이 서로의 일을 바꿔서 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자신이 제시한 세계급, 즉 “세 부류인 이들 사이의 참견(polypragmosynē)이나 상호 교환(기능의 바꿈: metabolē)은 이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해악(blabe)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더한 ‘악행’ (잘못함: kakourgia)이라 불러 지당” 하다고 역설한다(Plato, 2015, 434a-c). 그러므로 각 계급에 맞는 일만을 하는 것, 즉 “돈벌이를 하는 부류와 보조하는 부류, 그리고 수호하는 부류, 이들 각각이 나라에서 저마다 제 일을 할 때의 이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일을 함’ (제 할 일을 함: oikeiopragia)이” (Plato, 2015, 434c) 곧 올바름이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정의론에 따르면 “지배자는 지배하고, 노동자는 노동하고, 노예가 노예일 수 있다면, 국가는 정의롭다 (Popper, 2006, p. 155).”

이러한 기획 의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상 국가를 위해 시민들에게 처방하는 ‘약’ 으로서의 거짓말과 속임수는 선의만으로 포장하기 어려울 만큼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Plato, 2015).

최선의 남자들은 최선의 여자들과 가능한 한 자주 성적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제일 변변찮은 남자들은 제일 변변찮은 여자들과 그 반대로 관계를 가져야 하고, 앞의 경우의 자식들은 양육되어야 할 것이로되, 뒤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네. 만약에 우리의 무리가 최상급이려면 말일세. 그리고 수호자 집단이 최대한 분쟁 없는 상태로 있으려면, 이 모든 일은 통치자들 자신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행하여져야만 하네.(Plato, 2015, 459d-e)

철인 통치자는 시민들 몰래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산(畜産)과도 같은 일종의 인구계획을 시행해야 한다(Popper, 2006). 이를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정교한 속임수’를 통해 행하는 까닭은 그렇게 해야만 “변변찮은 사람들이 그때그때의 혼인에 대해 운을 닦할 뿐 통치자들을 닦하지는 않게 될 것” (Plato, 2015, 460a)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이와 같은 ‘인간 축산 계획’에 따르면 빼어난 젊은이들에겐 여자와의 자유로운 동침이 허용된다(Plato, 2015, 460b).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 가운데에는 “그들이 그 출정 중에 있는 동안은, 그가 입맞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도록” (Plato, 2015, 468c)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열등한 부모의 자식들은,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자식으로서 불구 상태로 태어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듯, 밝힐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숨겨” (Plato, 2015, 460c)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종현의 경우 이와 같은 “영아 유기(apothesis)” 관습에 대해 “헬라스에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던 산아 제한의 방법”이었으리라는 추측을 통하여 위의 인용구를 변호하고자 한다(Plato, 2015, p. 339, n. 27). 그러나 포퍼에 따르면 유아살해는 스파르타의 관습이지 당대의 아테네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Popper, 2006). “신생남아(新生男兒)가 태어났을 때 기형이거나 아주 허약할 경우, 아이를 방기하여 죽도록 산속에 내다 버리는 것은 그리스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관행” (Heo, 1998, p. 24)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파르타 이외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영아 유기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해 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Heo, 1998, p. 25). 영아 유기가 실제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스파르타를 제외하면, 플라톤의 기획에서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는 행위는 아니었던 것이다.

플라톤이 제시한 ‘하나의 국가’는 이러한 정의(正義)의 거대한 구현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각 부류의 사람들마다 제 기능을 하여야 하고, 같은 부류 안에서의 다른 기능을 할 수는 있으나, 절대 다른 부류의 기능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나라’라는 기획은 국가 구성원들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이상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Kang, 2010, p. 8)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수립으로부터 거대한 또 하나의 거짓말이 시민들에게 주입되어야 하며, 교육(paideia)에 대한 강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당대의 교육은 몸(sōma)을 위한 체육(gymnastikē)과 혼(마음: psyche)을 위한 시가(詩歌: mousikē)를 의미하나, 플라톤에게서는 체육도 혼을 위하여 제도화된 것으로 규정된다(Plato, 2015). 이 두 교과목은 “[혼의] ‘격정(기개)적인 면’ (to thymoeides)과 ‘지혜를 사랑하는(애지적인) 면’ (to philosophon)을 위해서, 부수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혼과 육신을 위해

서가 아니라, 그 둘을 위해서, 곧 그 둘이 ‘적절한 정도’ (to prosekon)만큼 조장되고 이완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부여된다(Plato, 2015, 411e-412a).

이때의 시가(詩歌) 교육은 주로 설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플라톤은 시가 교육에서 “시인들이 거기에 맞추어 설화를 지어야만 하는 규범(typos)들” (Plato, 2015, 379a)에 따라 철인 통치자가 설화를 선별 및 조작하고, “새로운 형식의 시가(詩歌)로 바꾸는 것을 나라 전반에 걸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고서 조심” (Plato, 2015, 424c)함으로써 완벽하게 통제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페니키아의 전설 같은” (Plato, 2015, 414c) 허구(pseudos)의 건국 신화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플라톤의 ‘고상한 거짓말’ 또는 ‘훌륭한 설화’로 알려진 ‘Gennaion Pseudos’ 이다(Kang, 2010). 이 설화는 두 가지로, 각각 ‘모든 시민은 땅으로부터 태어난 형제들’ 이라는 것과 ‘신은 인간을 세 부류로 만들었으며, 이들 각각에게는 황금, 은, 쇠와 구리를 섞어두었다’ 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Plato, 2015).

시민들이 첫 번째 신화를 믿게 되면, 그들 각자는 땅이라는 어머니의 같은 자손이며,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바칠 것을 각오하게 된다. 시민들에게 땅은 곧 국가이다. 이들은 지극히 자연적인 가족 간의 사랑과 우정을 바탕으로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게 된다. 두 번째 신화는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재능의 차이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시민들이 이 신화를 믿게 되면 불평등한 정치질서에 순응하게 된다. …… 두 번째 신화는 지배자에 대한 복종심의 원천이 된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첫 번째 신화 보다 두 번째 신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신화와는 달리 두 번째 신화에서 신의 도움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신화가 수호계급이나 장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들은 국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지배자에게 복종을 하게 된다. 여기서, 신화는 애국심과 복종심을 생성해내는 정신적 원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im, 2004, p. 117)

두 번째 설화에 대한 하위 계급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플라톤은 ‘혼을 구성하는 성분의 혼합’이라는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계급 구분이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하위 계급의 시민도 상위 계급의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플라톤에게 계급은 완벽한 축산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혈통에 의해 좌우되며, 그는 계급 간의 참견을 최대의 악으로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철과 은, 청동(구리), 그리고 금이 함께 섞임으로써 닳지 않은 상태(anomoiotes)와 조화롭지 못한 불규칙성(anomalía)” 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과 적대심이 내분(내란: stasis)의 원인이고, 내란은 정체(politeia)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았다(Plato, 2015, 545d-547a). 최선의 정체가 변화한다는 것은 곧 타락을 의미하므로, 플라톤이 계급 혼합을 인정하였을 리 만무하다.

애초에 플라톤은 이와 같은 교육을 시민들 각자가 타고난 성향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Plato, 2015). 주의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의 ‘성향’은 직업적 소질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급적 성향, 즉 혈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급상의 혼합이나 그에 상응하는 변화의 가능성은 단지 고상하게 태어났으나 질이 나빠진 아이들은 하위로 밀려나게 되며, 천하게 태어난 그 누구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음을 의미할 뿐이다(Popper, 2006, p. 237).” 이로부터 교육은 이미 혈통적으로 상위계급 즉, 지배계급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수호자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 체제로서의 기능만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2017; Popper, 2006).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믿게 할 어떠한 방도도 없고, “이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다른 사람들”(Plato, 2015, 415d)에게 이어진 후에야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에서도 잘 드러나듯, 플라톤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러한 설화의 내용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만일 이성(logos)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스스로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신화(mythos)를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Kim, 2004; Lee, 2011). 『국가』에 제시된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오로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비이성적 선전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은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므로 그가 ‘교육’이라 칭하는 행위는 개인의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회의 유지만을 위하여 철인 독재자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국가 차원의 거대한 선전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플라톤이 ‘지성’이라 칭한 모종의 능력을 통해 철학자인 자신만이 ‘독단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상을 이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Ⅲ. 『법률』: 억압의 영속화와 순치로서의 교육

1. 신화적 회귀와 독단적 법률 수립

플라톤은 후기에 이르러 자신의 형상 이론을 수정한다. 플라톤의 후기작 『티마이오스』에서는 범형으로서의 이데아를 다루기는 하지만 동식물이나 인간 등의 이데아는 등장하지 않는다(Song, 2009). 그러므로 후기작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형상이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는다. 인간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형상 또한 존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즉, ‘국가-형상 역설’은 플라톤의 후기 저작에서 국가의 형상을 폐기함으로써 해결된다. 그리고 플라톤은 그의 마지막 저서인 『법률』에 이르러 이상 국가의 설정 대한 새로운 접근인 법의 도입을 시도한다.

『법률』에서 구상하는 국가, 즉 마그네시아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면에서 클레이니아스는 민주 체제(demokratia), 과두(소수) 체제(oilgarchia), 최선자[들의] 체제(aristokratia), 군주 체제(basilikē [politia]), 참주 체제(tyrannis)를 나열하고, 이에 대해 아테네인은 이러한 정치체제 구분이 “주인 노릇을 하는 쪽의 지배력(kratos)이 그 각각으로 지칭되는 것” 이라면, 마그네시아의 정치체제는 “신의 이름으로 불려야만”(Plato, 2016, 712c-713a)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클레이니아스는 그 체제에 이름 붙을 신이 어느 신인지 물을 뿐, 이에 대한 대답으로 ‘크로노스 치세’ 설화를 제시한다(Plato, 2016; Yu, 2006).

크로노스는 인간의 어떤 자질(physis)도 모든 인간사를 능히 제 힘으로 스스로 경영할 수 없다는 걸, [그렇다고 해서] 오만(hybris)과 올바르지 못함(불의: adikia)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터라, 이 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서는, 우리 인간의 나라들에 왕들과 통치자들을 그때 임명했는데, 이들은 인간들이 아니라 인간보다도 더 신과도 같고 더 나은 부류인 수호신(신령: daimōn)들입니다. …… 그러니까 그 신도, 인간을 사랑하는 터라, 우리보다도 더 나은 부류인 수호신들(신령들: daimones)의 부류를 똑같은 식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로서는 아주 쉽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몹시 안도감(위안)을 갖게 하며 우리를 보살피고, 평화와 경외(공경) 그리고 훌륭한 법질서와 하고많은 정의(올바름: dikē)를 생기게 하여, 인간의 종족들이 분쟁 없고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화는 오늘날에도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 그건 신이 아니라 죽게 마련인 누군가가 다스리는 하고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이들과 고난에서 벗어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모든 방책을 다 써서 크로노스 시대의 것이라는 삶을 본받도록 해야만 하며, 또한 우리 안에 불사성(不死性: athanasia)을 지닌 것이 있는 한,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도 이에 복종하며 가정들과 나라들을 경영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성(nous)의 배분(dianomē)을 법(nomos)으로 일컬으면서 말씀입니다.(Plato, 2016, 713c-714a)

플라톤은 『국가』에서 제시한 형상으로서의 이상 국가를 폐기하고, 국가의 본(paradeigma)을 신화 속의 ‘크로노스 치세’에서 찾고 있다. ‘크로노스 치세’ 설화에서 알 수 있듯, “플라톤은 신화의 도움을 통해서 인간을 둘러싼 여러 가지 기원들을 제기”(Brisson & Kim, 2010, p. 168)하였다. 또한, 그는 “세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패해 간다면,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보다 완전한 것” 이리라 믿었으므로, 이상 국가의 설정에서 신화를 가져온 것은 “역사의 여명기에 존재했던 황금 시기”(Popper, 2006, p. 46)를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플라톤은 정치 이전의 상태에 있었던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한 진실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전이나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 신화(Mythos)를 통해 과거의 삶을 추측”(Kim, 2004, p. 112)하였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법’의 등장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점은 아테네인은 ‘크로노스’라는 신을 이미 호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에 붙일 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우리 안에서 불사성을 지닌 ‘지성(nous)의 배분(dianomē)으로서의 법(nomos)’임을 강조한다(Plato, 2016, 713e-714a; Yu, 2006). 이를 통해 플라톤이 제시한 법률은 “어떤 신적인 원천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신적인 본성을 지니며, 그것이 신적인 질서에 근거를 둔 것” (Yu, 2006, p. 120)으로, 신정정체(神政政體)의 실현을 위한 구체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o, 2009; Kim, 2004). 즉, “『국가』에서의 ‘천상의 원형’ (paradeigma)이 『법률』에서는 ‘지상의 법전’으로 내려온 것이다” (Han, 1999: 68). 또한, 마그네시아의 신정 체제는 법(nomos)을 통해 실현되며, 플라톤에게 이는 곧 지성(nous) 체제라 할 수 있다.

『법률』에서 플라톤이 강조하는 ‘법’을 이해하는 데 플라톤의 법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은 당대에 논란이 되었던 “법 또는 관습(nomos)과 자연(physis)이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합치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 (Park, 2019, p. 253)하여 대립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립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두고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법의 근거를 관습법과 자연법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이제껏 당연한 그래서 자연스런 것들로 받아들였던 모든 사회제도나 사회질서 및 종교 또는 도덕적 규범들을 단지 관습의 산물들로만 보는 시각” (Plato, 2016, p. 696, n. 44)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법률』의 원체인 ‘nomoi’는 법을 의미하며, 노모스(nomos)는 노모이(nomoi)의 복수형 표현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던 전통적 의미의 노모스는 “관행, 관습의 의미 외에도 신과 자연의 법칙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Park, 2010, p. 87-90). 이러한 노모스 개념은 기원전 5세기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플라톤 당대에 이르러 ‘피시스(physis)’라는 개념에 주관적인 것은 자연이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doxa(견해)’나 ‘nomos(관습)’와 같은 주관적인 것들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Park, 2007; Park, 2010). 이와 같은 변화는 “법이 믿어야만 하는 것으로 지시하는 그런 신들은 없다” (Plato, 2016, 890a)라고 주장하였던 당대 아테네의 무신론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신과 자연을 부정하여 피시스를 파괴하고 전통적으로 피시스에 기초하던 노모스를 그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론적 작업을 시도” (Park, 2010, p. 92)하였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노모스는 피시스에 근거하고, 피시스는 로고스에 근거하며, 로고스는 신과 연결된다(Seo, 1995). 노모스는 피시스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므로, 노모스 안에는 이미 피시스와 노모스가 통합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플라톤은 피시스와 노모스가 합치되는 것으로 여긴다(Park, 2007). 이에 플라톤은 『법률』을 통해 “법률은 그 법률을 제정하게 된 각각의 무리가 저들끼리 합의하기 나름인 그 방식에 따라 다르다” (Plato, 2016, 889e)는 주장

을 비판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Plato, 2017, 152a)라는 프로타고라스의 언명에 반발하며 “신이야말로 만물의 척도”(Plato, 2016, 716c)라고 주장하였던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자연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하는 것이라는 통찰은 오히려 법에 대한 발전된 인식의 결과물이다. 이처럼 소피스트들이 법의 문제를 다루는 데 인간에게 관심을 돌림으로써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실정법으로서의 노모스가 문제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노모스-피시스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통하여 비로소 법의 정당성이라는 문제가 전면에 등장(Oh, 2002, p. 75).” 했다는 점에서 소피스트들은 법철학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는 “인과법칙에 따라 상호 결합된 사실 체계로서의 자연은 의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할 수 없다”(Kelsen & Kim, 2009, p. 148)는 것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처럼 존재에서 당위를, 즉 사실에서 가치를 도출하는 것을 무어(Moore, 1959)는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로 규정한 바 있다. 플라톤은 이와 같은 오류 위에서 그의 정치사상을 제시한 것이며, 이것만으로도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다(Popper, 2006).

또한 『법률』의 내용을 수용하는 데 있어, 플라톤이 제시한 법률을 ‘관습법 대(對) 자연법’의 구도에서 파악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현대 법체계에서 자연법의 상위법 사상은 헌법의 최고성 이론에 여전히 간직되어 있으며, 자연권 개념은 인권과 기본권의 이름으로 현대 법체계에 편입되어 있다(Kim, 2017). 플라톤의 논의를 ‘관습법과 자연법의 대립’으로 규정할 경우, 마치 플라톤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 모종의 상위법을 옹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제시한 자연법은 현대의 헌법이나 자연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플라톤은 지성(nous)과 지성의 배분으로서의 법이 신을 본받기 위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형이상학적 성격’의 자연법을 주장한 ‘형이상학적 유형의 고전적 주창자’였다(Kelsen & Kim, 2009). 그러므로 플라톤의 자연법은 ‘신법(神法)’으로 한정하여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플라톤의 법사상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플라톤 전반에 대한 ‘연결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결주의’는 승계호에 의해 제기된 해석으로, “대화편들 간의 상호 연결성을 해명”(Song, 2009, p. 422)하려는 관점이며, 이에 따르면 플라톤 대화편은 『고르기아스』에 나타난 칼리클레스(Kallikles)의 주장, 즉 “공정의 관념이란 약자들이 강자를 속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속임수이며 강자는 약자를 정복하고 약탈하는 권리를 지닌다”(Song, 2009, p. 425)라는 이른바 ‘강자의 자연권’에 대한 반론이며, 『법률』은 반론의 최종 형태이다(Seung, as cited in Chang, 2014; Song, 2009; Youm, 2007). 칼리클레스가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플라톤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인지조차 불확실”(Oh, 2002, p. 101)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적어도 플라톤이 법을 강제 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묘사되는 플라톤의 모습은 표면적으로 정의로운 것처럼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라톤에게 ‘정의로움’이 느껴지는 기저에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사용하는 ‘정의’의 개념이 “‘자연적’ 특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Popper, 2006, p. 161)을 의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원칙으로 ‘약자 보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정의 개념은 플라톤 당대에도 통용되었던 것으로, 이는 페리클레스(Pericles)의 연설 가운데 ‘억압 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구절에서도 잘 드러난다(Thoukydides, 2011, p. 1137). 그러나 플라톤에게 정의는 ‘약자 보호’와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의 정의는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되는 약자를 배제하고, 약자들이 자신의 낮은 위치에 만족하고 사는 것을 강제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정의에 대한 상반된 인식은 “정의에 대한 욕구는 자기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불멸의 욕구 표현”(Kelsen & Kim, 2009, p. 129)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플라톤 또한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를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칼리클레스와 플라톤의 대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칼리클레스의 주장은 자연법에 대립되는 노모스의 옹호라고 보기 어렵다. 칼리클레스에게서 기존의 노모스는 약자들이 강자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적 정의, 즉 강자의 자연적 권리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Oh, 2002). 칼리클레스 또한 자연법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노모스 대 피시스’의 구도가 적합하지 않다. 이는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매우 다른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자연법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정의 문제는 다른 소피스트들의 주장에서도 등장한다. 예를 들어, 히피아스, 안티폰 등의 소피스트들 또한 노모스와 피시스를 대립시키고 피시스를 강조하며 노모스를 비판하였으나, 그들이 논지는 “평등사상을 강조하고 약자의 자연법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Oh, 2002, p. 93).

이와 같은 논의의 대립 또한 앞서 언급한 자연주의적 오류에서 비롯된다. 즉, 자연에 대한 관찰이라는 ‘사실’로부터 당위적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이미 오류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법론자들이 서로 아주 모순되는 정의원칙을 신의 본성으로부터 추론하였거나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Kelsen & Kim, 2009, p. 148).” 다시 말해, 칼리클레스와 플라톤 간의 대립은 같은 피시스의 범주 안에서 ‘자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애초에 결론 도출이 불가능한 문제를 두고 이루어진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 칼리클레스에게 피시스는 ‘타고난 힘’을 의미하였고, 플라톤의 경우 피시스를 명확히 정의한 바는 없으나, ‘크로노스 치세’ 인용문의 맥락에서는 ‘신’을 의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Park, 2007). 이를 바탕으로 칼리클레스와 플라톤은 피시스의 자연법을 각각 ‘약육강식(弱

肉強食)’ 과 ‘우주의 질서로서 신의 뜻’ 으로 봄으로써 합의 불가능한 대답을 이어갔던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자연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를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나라 또는 법률이 따라야 할 ‘신의 뜻’ 또는 ‘이성’ 의 결과를 누가 제시하는가, 즉 ‘최초의 입법자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마그네시아가 “어떤 이상적인 입법가에 의해서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상정” (Yu, 2006, p. 130)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는 누가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가 최고 관리인 수호자(Guardian)도 어디까지나 제정된 법의 수호자일 뿐이지 입법에는 별다른 관여를 하지 못한다(Park, 2010, p. 106).”

그러나 입법자의 정체는 플라톤의 언명들 가운데서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법률』에서도 플라톤은 “최대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로움(phronēin) 및 절제 있음(마음이 건전함)과 한데 합쳐질 때” (Plato, 2016, 711e-712a), 즉 ‘철인왕’ 이 존재하는 경우 최선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국가』에서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에 훌륭한 참주와 칭찬할 만한 입법자가 한 시대에 태어나, “이 나라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는 어떤 힘이 이 입법자와 공유” (Plato, 2016, 710c-711a)될 때 최선의 국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곧 ‘철인왕’ 의 역할이 ‘철인과 왕’ 으로 구분되지만, 그 둘이 함께 권력을 가진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입법자의 역할은 철인에게 부여될 것이 분명하다.

입법자가 곧 철인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크로노스 신화’ 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가』와 『법률』 사이에 저술된 『정치가』에서도 ‘크로노스 치세’ 에 대해 언급이 “큰 신화(mege mythos)의 일부” (Plato, 2016, p. 318, n. 56)로 언급된다. 『정치가』에서 묘사된 크로노스 치세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은 신령들(theioi daimones)의 보살핌 아래 “저마다 서로 부족함이 없어서 전혀 사납지도 않고 서로 잡아먹지도 않아 그야말로 싸움도 불화도 없었다” (Plato, 2014, 271d-e)고 설명된다. 크로노스 치세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를 종합한다면, 그러한 ‘황금의 시대’ 가 그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까닭은 신령, 즉 daimōn의 보살핌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수립과 법률의 제정은 daimōn을 따라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신령에 대한 언급은 『국가』에서도 등장한다.

이들은 여생의 대부분을 지혜사랑(철학)으로 소일하지만, 차례가 오면 나라일로 수고를 하며, 저마다 나라를 위해 통치자로도 되는데,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훌륭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어서 일세. 그리고 이처럼 언제나 자기들과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는 나라의 수호자들로서 자기들 대신에 남긴 다음, ‘축복받은 자들의 섬들’ 로 떠나가서 살게 되도록

해야만 할 결세. 한편, 나라는 이들을 위해 기념물을 만들고 공적인 행사로 제물을 올리는 의식을 행할 것이며, 만약에 피티아(Pythia)가 동의의 대답을 내린다면, 이들은 수호신(daimōn)들로 모시되, 만약에 그런 대답을 내리지 않는다면, 복되고 신과도 같은 분들로서 모시도록 해야만 할 결세. (Plato, 2015, 540a-d)

daimōn이 신령으로 번역되는 경우 이는 신보다 격이 존재를 의미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각자의 혼에 붙어있는 수호신을 의미하기도 한다(Plato, 2016, p. 364, n. 31).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수호신은 개인의 혼이 아니라 국가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기에 부여되는 칭호이므로, 『법률』에 언급된 신령과 동일한 대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신령(daimōn)의 보살핌에 대한 언급은 플라톤이 『법률』에서도 여전히 『국가』에서의 철인 통치에 대한 열망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통치자-철학자의 기능은 입법자로서의 법률로 변화” (Cho, 2009, p. 142)했다는 점뿐이다. 그리고 작중 인물의 입을 빌려 이 모든 기획을 제시하는 이는 그 스스로가 철인(哲人)인 플라톤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률』에서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통치의 모습은 『국가』의 철인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이 단독으로 제시하는 법률의 구현에 불과하다” (Park, 2010, p. 106). “소수의 지혜를 가진 철인의 지배, 또는 ‘큰 힘’에 의한 법률의 확립 등을 최선의 상태로 간주” 한다는 점에서(Che, 2005, p. 70), 『국가』, 『정치가』, 『법률』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와 『법률』을 서로 다른 별개의 정치사상으로 보는 것은 오류이다.

‘최선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통치 또는 제정되는 법률’은 그 자체만을 두고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개인 또는 소수가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론적 독단” (Lee, 2014, p. 20)에서 비롯된다면 이는 독재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입법과정에서 민주성을 결여한 법에 의한 통치는 현대적 의미에서 법치주의의 구현이 아님이 분명하다(Park, 2010).

뿐만 아니라, 플라톤은 일단 제정된 법률에 대해 개정이 불가능해야 함을 주장한다(Plato, 2016). 변화에 대한 혐오적 태도는 플라톤 사상의 곳곳에 드러나 있다. 법률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최선의 법률’이라는 발상에 이미 함축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면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변화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법의 개정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하였다(Plato, 2016, 772c-d). 이와 같은 플라톤의 구상은 “일단 법이 제정되고 나면, 입법자나 그 외 사람들이 모두 법률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민주적 권리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Cho, 2009, p. 142).”

그러므로 플라톤이 『법률』에서 법을 강조하고, 이 법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만으로 그의 정치사상에서 ‘법치주의’를 읽어내는 것은 ‘법치’를 지나

치게 단순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또한, 법의 적용 범위 안에 통치자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플라톤이 제시한 법률을 통치자의 제어 수단으로 여기는 것 또한, ‘법’에 대한 현대적 관점을 플라톤에게 소급함으로써 발생한 잘못된 접근이다. 나아가 플라톤 당대의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평가절하하고, 플라톤의 정치사상을 진정한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플라톤의 ‘자유’, ‘정의’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이다. 『법률』에 제시된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오히려 철인인 플라톤 자신의 사후에 발생하게 될 변화, 즉 ‘독재자의 후계자 문제’를 막기 위한 영속적 장치로서 ‘법에 의한 독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Popper, 2006; Park, 2010).

2. 억압과 의지 말살 교육

『법률』에 이르러 플라톤이 이상 국가의 범형(paradigma)을 형상 이론이 아닌 신화 가운데서 찾음으로써 II장에서 다루었던 국가의 형상(eidos)과 이상 국가의 실제 사이에 발생하는 양립 불가능성은 해결된다. 『법률』에 나타난 이상 국가가 신화 속의 신정 체제 국가이고, 그러한 신정 체제는 법을 통해 구현된다면, 시민들이 법에 복종하는 것은 곧 이상 국가를 수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이상 국가의 존재를 “시민들의 감성이 아니라 이성애 호소하는 설득, 즉 ‘이성적 설득’”을 통해 설명할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Rhee, 2017, p. 42).

물론, 플라톤이 『국가』에서의 비이성적 선전까지도 ‘설득’으로 지칭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설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Plato, 2015). 실제로 플라톤이 이성적 설득을 지향한 『법률』에서조차 엄밀한 의미의 이성적 설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0장의 ‘신 존재 논증’이 유일하다(Rhee, 2017; Son, 2014). 또한, 플라톤은 신화적인 설화(mythologema)들도 ‘설득’에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Plato, 2016). 그럼에도, 플라톤이 『법률』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기존의 입법자들은 순전히 강제력만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법에 복종하도록 한다고 보고, 그러한 방식을 비판하며 강제와 설득을 혼화(混和)하는 ‘세 번째 방식’을 추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Plato, 2016).

이와 같은 방식은 강제 규정인 법조문 앞에 “설득과 권고의 성격을 지니는 전문(前文) 또는 서곡(prooimion)을 둠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Rhee, 2017, p. 33). 이때의 전문은 “법인 지시를, 즉 입법자가 법으로 공포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이 호감을 갖고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호감으로 해서 더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 (Plato, 2016, 723a) 도입되며, “법률이 수립된 이유를 서술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Chang, 2014, p.

207).

이처럼 『법률』에서 플라톤은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법률』과 연결되는 『국가』나 『정치가』에서와는 달리 ‘설득’과 ‘자발성’을 강조한다(Rhee, 2017). 이는 플라톤이 법의 목적을 “법 제정을 하게 되는 나라가 자유로우며 자체적으로 우애롭고 지성(nous)을 갖추게 되도록”(Plato, 2016, 701d) 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플라톤은 “대중들(ta plethē)을 전적인 자유(pasa eleutheria)로 몰아”(Plato, 2016, 699e)간다는 측면에서 마그네시아를 위한 법률이 페르시아와 같은 여타의 법률과 차별화됨을 강조한다. ‘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법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즉 자유로운 행위가 언제나 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다(Son, 2014).

『법률』에서의 ‘교육’은 “지성(nous)과 정의(올바름: dikēs)와 상관없음”(Plato, 2016, 644a) ‘양육’과 구분되는 것으로, “아이 적부터 [사람으로서의] 훌륭함(덕: aretē)과 관련된 교육, 곧 올바르게(meta dikēs) 다스릴 줄(arkhein)도 그리고 다스림을 받을 줄(arkhesthai)도 아는 완벽한 시민(polite teleos)으로 되는 것에 대한 욕구와 사랑을 갖는 자로 만드는 교육”(Plato, 2016, 643e)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법에 의해 규정된 바른 원칙(ho logos orthos)”(Plato, 2016, 659d)을 통해 아이들을 이끌어 감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민으로 육성하며, 그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이다.

시민들이 법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는 과거로부터의 모든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현대적 법치주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플라톤 당대에 대표적인 민주주의자였던 페리클레스조차도 ‘법에 대한 경외심’과 “그것을 어기는 것을 치욕으로 간주하는 불문율에 순순히 복종”(Thoukydides, 2011, p. 1137)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법은, 그것이 자발적이건 법에 명시된 제재에 의한 것이건, 해당 법에서 요구되는 행위가 실현 또는 제재되거나, 법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Lee, 1995; Song & Shin, 2020b; Zippelius, 1991). 그러나 당대와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를 받아들이고, 법에 대한 자발적 수용이 가능한 것은, 법이 모종의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이 전제될 때 유효하다. 플라톤의 법은 피시스로서의 신 또는 플라톤 자신을 암시하는 1인 입법자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또한, 법에 대한 동의는 법에 대한 ‘절대적 순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준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근거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전통적 법체계에서 법적 책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근거로 하여 부과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Pak & Chang, 2011; Song & Shin, 2020b). 특히, 그것이 ‘자유’를 지향하는 법이라면, 수범자의 의지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법률』에서 시민들이 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제시된 교육은 의지의 제거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의 법률이 최대한으로 구현된 나라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즉 자유로운 나라를 위한 법률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 누구도 통솔자가 없는(anarchon)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그 누구의 혼도 뭔가를 제 스스로 혼자서 하도록 습관적으로 자신을 버릇 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지할 때나 놀이를 할 때도 말입니다. 모든 전쟁에서도 모든 평화의 시기에도 언제나 통솔자(ho archon)를 바라보면서 그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조차도 그의 조종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한마디로 말해, 남들과 따로 떨어져서 뭔가를 할 줄도 모르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언제나 일제히 그리고 동시에 공동의 생활을 모두가 무엇보다도 최대한 하게 되도록 습관을 통해서 혼을 가르칩니다.(Plato, 2016, 942a-c)

이와 같은 생활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의 형태는 “버릇 들이기”로 제시된다(Plato, 2016, 659d-660a). 그뿐만 아니라, 이는 단지 군사적 원칙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화 시에도 바로 소싯적부터 수련해야만 하는 것” (Plato, 2016, 942c)이다. 이처럼 일상 가운데 ‘버릇 들여진’ 시민들의 삶을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자유’라는 개념에 모종의 의지 작용이 전제되기 마련이나, 인용문에 제시된 플라톤의 기획은 그러한 의지의 제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이와 같은 복종의 형태를 ‘자발적’이라 칭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이는 플라톤이 설득을 사람들이 “가급적 고분고분해지도록” (Plato, 2016, 890c)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처럼 버릇과 습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종은 자발적이라기보다, ‘자동적 복종’ 정도의 상태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플라톤 사상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유를 이와 같은 자동적 복종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각자의 계급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곧 정의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자신의 계급 이상의 의지나 자발성을 갖는다면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 또한, 『법률』에서 법을 제정하는 이유로 “전쟁도 내란도 아니고, 이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Plato, 2016, 628c)을 제시하며, 이때의 내란(stasis)은 “철과 은, 청동(구리), 그리고 금이 함께 섞임으로써” (Plato, 2015, 547a) 발생한다. 즉, 『국가』에서의 정의관은 『법률』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플라톤에게 자유는 수호자, 전사, 생산자의 각 계급에 속하는 각자에게 “자신의 본성에 맞는 권리만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Son, 2015, p. 58).

그렇기에, 인용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통솔자가 아닌 이들은 통솔자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아주 간단한 것조차,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통솔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의가

곧 자유의 전제이며, 법률은 이러한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률은 곧 ‘이성(nous)’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플라톤에게 자유는 이성 안에서 추구되어야만 하고, 이성 밖에서 추구되면 이는 욕망에 예속되는 것으로 규정된다(Son, 2015). 이와 같은 방식의 자유 규정, 즉 자유를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의 배신’은 플라톤 이후에도 루소(J. J. Rousseau)와 피히테(J. G. Fichte)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로부터 제시되었다(Berlin, 2002; Kang, 2010; Song & Shin, 2020a).

이들이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성에 의한 억제를 통해 자유를 ‘욕구할 수 있는 만큼만 원하는 자유’로 왜곡하였다는 점이다. 『법률』에서 절제를 “이성과 감정 사이의 조화로서의 가장 높은 형태의 지혜”(Youm, 2007, p. 245)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조건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그렇기에 자유에는 사회 안에서 허용되는 한계가 부과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절제가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득적인 계급에 의한 한계로 구획되는 것은 분명 ‘자유’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다.

이와 관련되는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그와 같은 한계를 철학자 자신의 사변을 통해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형상이론’으로부터 『법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이 구상하는 이상 국가 또는 차선의 국가를 위한 이상적 법률의 도입이 이성의 발현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당연하게 여기는 독단적 태도를 보인다. 이로부터 그는 자신이 상정한 이상을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욕구로서의 의지를 제거하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자유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제거한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보편적 ‘이성’으로 포장하여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경험 세계에 적용되는 일종의 법칙을 연역하여 이를 적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이상 추구는 항상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진지한 의도로 고안되었다면 이상향은 분명히 창안한 사람의 이상(理想, ideal)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 …… ‘이상’과 일상적인 욕망의 대상을 구분하는 차이는 이상이 개인과 관계가 없는 객관적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상은 적어도 표면상 욕구를 느끼는 자아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바랄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은 자기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욕구하는 사람이 그 밖에 누구나 욕구하기를 바라는 욕구의 대상이라고 정의 내려도 좋다. …… 이렇게 개인과 무관한 윤리로 보이는 견해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이는 견해도 사실은 나 자신의 욕구라는 개인적 근거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욕구의 대상이 나 자신과 무관할 때조차도 욕구는 나의 욕구이기 때문이다.(Russell, 2009, p. 179)

이처럼 “하나의 전체로서의 사회의 청사진을 사용해서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는 유토피

아직 시도는 강력한 한두 사람의 중앙집권적 통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독재로 흐르기 쉽다”(Popper, 2006, p. 266). 이것이 교육 전체에 대한 이상적 목적을 제시하는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이 『국가』와 『법률』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로서의 위상을 가질 때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사람(person)인 우리들은 상황, 이해관계 등과 같은 영향에 저항해야 하겠지만, 제도(institutions)란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과의 타협의 결과”(Popper, 2006, p. 265)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플라톤이 『법률』에 이르러 그의 형상 이론을 수정하여 이성적 설득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상에 근거한 국가의 형태를 설정하고, 그러한 국가를 위한 교육의 목적을 도출하는 이성적 독단에 빠졌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제도적 교육에서 이와 같은 ‘독단적 교육 목적 설정’을 고수하는 한, 교육이 비이성적 선전(宣傳)이나 시민들을 의도대로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된다. 플라톤이 이성을 통해 보았다고 믿었던 이상적인 국가와 이를 위한 이상적인 교육은 모두 그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물일 뿐,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IV. 결 어

『국가』에서 제시된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그의 형상 이론과 그가 제시한 이상 국가, 즉 국가의 형상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본고는 플라톤의 교육이 이처럼 비합리적으로 제시된 이상 국가의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에 불과함을 밝히려 하였다. 이는 플라톤이 자신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기는 거짓말을 교육에 사용하고자 했다는 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플라톤의 후기작인 『법률』에 이르러 형상 이론이 수정됨에 따라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하늘에 있는 형상에서 ‘크로노스 치세’라는 신화적 기원으로, 또한 신정 체제를 모방한 법률로 변화한다. 이로 부터 플라톤은 『국가』에서의 비합리성을 극복하고 전문(前文) 등의 활용을 통해 이성적 설득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플라톤 자신만을 입법자로 설정함에 따라 이때의 법 또한 플라톤의 독단적 이상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교육 또한 이러한 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의지의 제거’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시민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플라톤은 칸트적 의미에서 순수 이성에 근거한 이상으로부터 경험 세계 또

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 실천의 영역인 정치적 목적을 연역하고, 이로부터 교육 목적까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방법을 ‘독단적 교육 목적 설정’으로 규정하였다. 즉 플라톤에 의해 제시된 교육 목적은 이성적 독단의 결과물이다. 플라톤이 제시한 교육이 선전이나 순치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철인 독재 또는 1인 입법자로 대표되는 개인의 독단,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의 이성적 독단에 있다. 플라톤의 교육이 ‘독단적 교육 목적 설정’에 근거하는 한, 교육 목적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본고의 논의가 국가 차원의 교육, 즉 ‘제도로서의 교육’에 한정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교육관 차원에서의 교육 목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개인이 특정한 교육관을 갖는 데서 이상적인 국가 또는 사회의 모습을 설정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고, 특정한 결과를 추구하는 교육적 지향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 의미에서의 ‘철학’이 이러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견해, 신념 등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Han & Lee, 2019). 그러나 이러한 ‘철학’의 일상적 용법을 전문 연구 영역으로서의 교육철학 분과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태도에는 교육에 대한 사적 가치 판단을 공적 영역인 하나의 학문 분과로 가장(假將)하는 오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 설정’이라는 과제를 교육철학의 역할과 기능으로 설정하는 한, 본고의 비판은 현재에도 교육철학이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이고 적시적인 문제이다. 서구 사상의 근거로 작용하는 플라톤조차 이상적인 교육의 목적 설정에 실패하였음에도, 스스로 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것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그리고 외부로부터 전문성을 보장받는 학문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교육철학을 이러한 ‘개인적 교육관 수립’ 또는 ‘개인의 가치관 선언’ 정도로 환원하려는 태도는 교육철학의 학문적 성격을 지나치게 왜소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에 기대어 그것으로부터 교육 목적을 도출하는 이성의 독단을 경계해야 한다. 이처럼 교육철학에 내재한 ‘독단적 교육 목적 설정’의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교육철학 연구 방향을 새롭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ristotle(2007). *Metaphysica* (J. S. Kim, Trans.). EJ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n.d.). ☞ 국문: Aristotle (2010). **형이상학** (김진성 역). 이제이북스. (원서출판 n.d.).
- Berlin, I. (2002). *Freedom and its betrayal: six enemies of human liber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isson, L., & Kim, Y. S. (2010). The role of myth in Plato and its prolongations in antiquity. *Human Beings, Environment and Their Future*, 5, 159-194. <http://doi.org/10.34162/hefins.2010..5.007> ☞ 국문: 킵브리송, 김유석(2010). 플라톤에게서 신화의 역할과 고대에서 그 역할의 확장. **인간·환경·미래**, 5, 159-194.
- Chang, C. W. (2014).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prelude(prooimion) in Plato's Nomoi.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4), 193-217. <http://doi.org/10.15754/jkpe.2014.36.4.009> ☞ 국문: 장지원(2014). 플라톤의 『법률』 전문(prooimion)의 교육적 의의. **교육철학연구**, 36(4), 193-217.
- Che, J. Y. (2005). The change of the Plato's ideal society plan: On philosopher rulers and laws, courage and mildness·harmony, common and private ownership. *The Korean Assosiation for the Western Ancient History and Culture*, 17, 53-90. ☞ 국문: 최자영 (2005). 플라톤의 이상적 사회 구상의 변화: 철학자-통치자와 법률, 용기와 온유·화목, 공유제와 사유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17, 53-90.
- Cho, E. R. (2009). The study on the law thoughts of ancient greek: With Platon and Aristoteles as the central figure. *Journal of Mediterranean Area Studies*, 11(1), 133-158. <http://doi.org/10.18218/jmas.2009.11.1.133> ☞ 국문: 조은래(2009). 고대 그리스의 법사상: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11(1), 133-158.
- Durkheim, E. (2019). *Education and sociology* (J. K. Lee, Trans.). Baeyou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956). ☞ 국문: Durkheim, E. (2019). **교육과 사회학** (이종각 역). 배영사. (원서출판 1956).
- Han, S. S. (1999). Plato's theory of the law-state in the laws.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2, 59-80. ☞ 국문: 한상수(1999). 플라톤의 법치국가론: 『법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 59-80.
- Han, Y. S., & Lee, K. H. (2019). The concept of parenting philosophy and a suggestion of direction of Korean parenting philosophy.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4), 25-46. <http://doi.org/10.34226/gcl.2019.9.4.25> ☞ 국문: 한영식, 이경화 (2019). 양육철학의 개념과 우리나라 부모양육철학의 방향성 제안.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4), 25-46.

- Heo, S. I. (1998). *Education and civic life of Spartans*. Samyoungsa. ☞ 국문: 허승일(1998). **스파르타 교육과 시민생활**. 삼영사.
- Kang, S. H. (2010). A study on 'Religion' as political ideology in Rousseau's thought by comparing with Plato.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9, 1-24. <http://doi.org/10.15754/jkpe.2010..49.001> ☞ 국문: 강성훈(2010). 루소사상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 플라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49, 1-24.
- Kelsen, H., & Kim, S. B. (2009). What is justice?.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0(1), 125-153. ☞ 국문: Kelsen, H., & 김선복(2009). 정의란 무엇인가?. **인문사회과학연구**, 10(1), 125-153.
- Kim, K. M. (2017). A crit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in Plato's Republic. *The Journal of Educational Idea*, 31(1), 1-24. <http://doi.org/10.17283/jkedi.2017.31.1.1> ☞ 국문: 김기민(2017).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교육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사상연구**, 31(1), 1-24.
- Kim, Y. M. (2004). A meaning of political myths in Plato's world. *The Korean Review of Political Thought*, 10, 111-128. ☞ 국문: 김용민(2004). 플라톤의 세계에서 신화의 의미: 정치적 신화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10, 111-128.
- Kneal, W., & Kneal, M. (2016). *The development of logic I* (W. S. Park, S. B. Bae, H. S. Song, & W. B. Choi, Trans.). Hangilsa.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 국문: Kneal, W., & Kneal, M. (2016). **논리학의 역사 1** (박우석, 배선복, 송하석, 최원배 공역). 한길사. (원서출판 1978).
- Lee, H. K. (2014). *How to read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Sechang Media. ☞ 국문: 이한구(2014).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읽기**. 세창미디어.
- Lee, K. W. (1995).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and the education of the law.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21, 42-55. ☞ 국문: 이기우(1995). 법의 실효성과 법교육. **시민교육연구**, 21, 42-55.
- Lee, S. B. (2011). The role of myth in Plato's philosophy. *Philosophia*, 120, 207-228. ☞ 국문: 이상봉(2011).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 신화의 역할. **철학연구**, 120, 207-228.
- Lee, Y. (1997). The conceptual historical study of the term 'dogmatic' in Kant.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14, 99-112. ☞ 국문: 이엽(1997). 칸트의 '독단적' 개념에 관한 개념사적 탐구. **동서철학연구**, 14, 99-112.
- Moore, G. E. (1959). *Principia ethica*. Cambridge Univ Press.
- Oh, S. H. (2002). The legal philosophy of the sophists.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5(2), 75-104. ☞ 국문: 오세혁(2002). 소피스트들의 법철학. **법철학연구**, 5(2), 75-104.

- Pak, U. J., & Chang, H. W. (2011). Debates on neuroscience and the law.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41, 283-306. ☞ 국문: 박은정, 장하원(2011). 일반문단: 신경과학과 법을 둘러싼 논쟁. *법과 사회*, 41, 283-306.
- Park, H. K. (2007). *Metaphysic Lecture 2*. Minumsa. ☞ 국문: 박홍규(2007). **형이상학 강의 2**. 민음사.
- Park, J. H. (1979). A study on the basic structure of Plato's form theory. *Journal of Humanities*, 8(1), 27-46. ☞ 국문: 박종현(1979). 플라톤의 형상이론의 기본구조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 8(1), 27-46.
- Park, J. H. (1987). Plato's synthesis theory.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1, 1-41. ☞ 국문: 박종현(1987). 플라톤의 綜合理論. *서양고전학연구*, 1, 1-41.
- Park, J. H. (2010). The significance of Nomoi(Laws) in the system of Plato's political theory: A suggestion on how to read Nomoi(Laws). *The Journal of Legal History*, 42, 85-118. <http://doi.org/10.31778/lawhis.42.201010.85> ☞ 국문: 박종현(2010). 플라톤의 정치이론 체계에서 『법률(Nomoi)』의 의미. *법사학연구*, 42, 85-118.
- Park, J. H. (2019). *The depth of Hellas thought*. Seokwangsa. ☞ 국문: 박종현(2019). **헬라스 사상의 심층**. 서광사.
- Plato (2014). *Politikos* (T. K. Kim, Trans.). Hangilsa. (Original work published n.d.). ☞ 국문: Plato (2014). **정치가** (김태경 역). 한길사. (원서출판 n.d.).
- Plato (2015). *Politeia* (J. H. Park, Trans.). Seokwangsa. (Original work published n.d.). ☞ 국문: Plato (2015). **국가·정체** (박종현 역). 서광사. (원서출판 n.d.).
- Plato (2016). *Nomoi* (J. H. Park, Trans.). Seokwangsa. (Original work published n.d.). ☞ 국문: Plato (2016). **법률** (박종현 역). 서광사. (원서출판 n.d.).
- Plato (2017). *Theaitetos* (J. Y. Jeong, Trans.). EJ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n.d.). ☞ 국문: Plato (2017). **테아이테토스** (정준영 역). 이제이북스. (원서출판 n.d.).
- Plato (2019a). *Parmenides* (B. H. Cheon, Trans.). Soop. (Original work published n.d.). ☞ 국문: Plato (2019a). **플라톤전집 V: 플라톤의 다섯 대화편(테아이테토스 / 필레보스/티마이오스 / 크리티아스 / 파르메니데스)** (천병희 역). 숲. (원서출판 n.d.).
- Plato (2019b). *Timaios* (B. H. Cheon, Trans.). Soop. (Original work published n.d.). ☞ 국문: Plato (2019b). **플라톤전집 V: 플라톤의 다섯 대화편(테아이테토스 / 필레보스/티마이오스 / 크리티아스 / 파르메니데스)** (천병희 역). 숲. (원서출판 n.d.).
- Popper, K. (2006).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ume I: The spell of Plato* (5eds.). (H. K. Lee, Trans.). Mi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66). ☞ 국문: Popper, K. (2006). **열린사회와 그 적들 I** (이한구 역). 민음사. (원서출판 1966).
- Rhee, K. B. (2017). True rhetoric of lawgiver in Plato's Laws,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 64, 31-65. ㉮ 국문: 이기백(2017). 플라톤의 『법률』에 나타난 입법가의 참된 수사술. **철학사상**, 64, 31-65.
- Russell, B. (2009).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Eulyoo Publishing. (S. B. Seo, Trans.). Eulyoo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국문: Russell, B. (2009). **서양철학사** (서상복 역). 을유문화사. (원서출판 1996).
- Seo, J. H. (1995). The change in Plato's view of the state in Laws.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55, 87-104. ㉮ 국문: 서중현(1995). 『법률』편에 나타난 플라톤의 국가관의 변화. **철학연구**, 55, 87-104.
- Son, B. S. (2014). The problem of persuasion in Platos laws: Focusing on the analogy of doctors and the refutation on impiety.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53(2), 91-122. ㉮ 국문: 손병석(2014). 플라톤 법률편에 나타난 설득의 문제: 의사비유와 불경론에 대한 논박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53(2), 91-122.
- Son, B. S. (2015). Plato and democracy. *Pan-Korean Philosophy*, 78(3), 39-69. ㉮ 국문: 손병석(2015). 플라톤과 민주주의. **범한철학**, 78(3), 39-69.
- Song, M. K., & Shin, C. H. (2020a).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istic education: Case in germany, focusing on Reden an die deutschen Nation of Fichte.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6(2), 107-124. <http://doi.org/10.29318/KER.26.2.5> ㉮ 국문: 송민규, 신창호(2020a). 민족주의 교육 성립에 관한 연구: 독일의 사례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6(2), 107-124.
- Song, M. K., & Shin, C. H. (2020b). A philosophical analysis on the limit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Focusing on the concept of legal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dea*, 34(3), 55-70. <http://doi.org/10.17283/jkedi.2020.34.3.55> ㉮ 국문: 송민규, 신창호(2020b). 「인성교육진흥법」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분석: 법적 실효성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4(3), 55-70.
- Song, Y. J. (2009). Seung' s Plato rediscovered. In T. K. Seung, J. S. Um, J. H. Kim, S. Y. Baek, S. J. Lee, & J. H. Kang (Eds.), *Western Philosophy and Thematics* (pp. 422-479). Acanet. ㉮ 국문: 송영진(2009). 승계호 『플라톤의 재발견』. 승계호, 엄정식, 김재희, 백승영, 이승중, 강진호, 선우환, 김희정, 송영진, 김재호, 정대현 (공저). **서양철학과 주제학** (pp. 422-479). 아카넷.
- Thoukydides (2011). *Ho polemos ton peloponnesion kai athenaion* (B. H. Cheon, Trans.). Soop. (Original work published n.d.). ㉮ 국문: Thoukydides (2011). **펠로폰네소스전쟁사** (천병희 역). 숲. (원서출판 n.d.).
- Youm, S. K. (2007). Seung' s interpretation of Plato' s philosophy.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27, 221-253. ㉮ 국문: 염수균(2007). 승계호의 플라톤 해석. **서양**

고전학연구, 27, 221-253.

Yu, H. (2006). Principles and ultimate goals of legislation in Plato' s laws.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26, 115-153. ☞ 국문: 유혁(2006). 플라톤 『법률』편에서 입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원리. *서양고전학연구*, 26, 115-153.

Zippelius, R. (1991). *Basic concepts of legal and national sociology*. Beck. ☞ 독문: Zippelius, R. (1991). *Grundbegriffe der rechts- und staatssoziologie*. Beck.